|  |  |  |
| --- | --- | --- |
|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  국무원령 제654호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가 2014년 7월 23일 국무원 제5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4년 8월 7일  **제1조** 공평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의 신의성실과 자율경영을 촉진시키며 기업의 정보공시를 규율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규제를 강화하며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정부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사회 감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기업정보라 함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한 기업이 생산 경영 활동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와 정부부서가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지칭한다.  **제3조** 기업정보의 공시는 진실적이고 적시적이어야 한다. 기업이 국가비밀, 국가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과 연관된 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 비밀보호 행정관리부서 또는 국가안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의 관련 부서가 기업의 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업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기업정보 공시 업무를 총괄하고 국가 사회신용정보 플랫폼 건설의 총체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기업정보 공시 시스템 건설을 추진한다.  **제5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정보 공시 업무를 추진, 감독·관리하고 기업정보 공시 시스템 건설을 조직한다. 국무원 및 그 산하 관련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정보 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 관련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정보 공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직책 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등록·등기, 비안(備案) 정보;  (2) 동산 저당권 설정등기 정보;  (3) 지분 질권 설정등기 정보;  (4) 행정처벌 정보;  (5)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전 항에서 규정한 기업정보는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내에 공시해야 한다.  **제7조** 공상행정관리부서 이외의 기타 정부부서(이하 '기타 정부부서'로 약칭)는 직책 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행정허가, 변경, 갱신 정보;  (2) 행정처벌 정보;  (3)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기타 정보.  기타 정부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항에서 규정한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정부부서는 국가 사회신용정보 플랫폼 건설의 총체요구에 따라 기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업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제8조** 기업은 매 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연도보고서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설립 등기를 행한 기업은 그 다음 연도부터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한다.  **제9조** 기업 연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통신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정보;  (2) 개업, 휴업, 청산 등 기업의 존속상태에 관한 정보;  (3) 자회사 설립, 지분 매입 등 정보;  (4)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또는 지분유한회사인 경우 그 주주 또는 발기인이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시간, 출자방식 등 정보;  (5)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 정보;  (6) 기업의 웹사이트 및 인터넷 숍의 명칭, 웹사이트 주소 등 정보;  (7) 기업의 종업원 수, 자산총액, 부채총액, 대외 보증·담보액, 자본 총계, 총 영업수익, 주요 영업활동 수익, 이윤총액, 순이익, 총 납세액.  전 항 제1~6호에 규정한 정보는 사회에 공시해야 하고 제7호에 규정한 정보의 사회 공시 여부는 기업이 결정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ㅍ기업의 동의를 득한 후ㅍ기업이 공시하지 않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지분유한회사의 발기인이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시간, 출자방식 등 정보;  (2)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 정보;  (3) 행정허가 취득, 변경, 갱신 정보;  (4) 지적재산권 질권 설정등기 정보;  (5) 행정처벌을 받은 정보;  (6)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기타 정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한부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11조** 정부부서와 기업은 각각 공시한 정보의 진실성과 적시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12조** 정부부서는 그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정정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부부서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부서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그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정정해야 한다. 기업 연도보고서에 공시된 정보의 정정은 매 년6월 30일 전에 완성해야 한다. 정정하기 전과 정정 후의 정보는 동시에 공시해야 한다.  **제13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기업의 공시정보가 허위정보임을 발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고자료 접수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및 처리하여 서면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 조례에 따라 공시한 기업정보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정부부서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접수한 정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평, 규범의 요구에 따라 기업등록번호 추첨을 통해 추출검사 대상 기업을 확정한 후 기업의 정보공시 상황을 검사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 정보공시에 대한 추출 검사는 서면검사, 현장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정보공시에 대한 추출 검사를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기타 정부부서의 검사, 조사결과 또는 전문기구의 전문 결론을 사용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추출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한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기업이 공시한 정보에 대해 추출검사를 진행하거나 신고에 근거하여 조사하는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응하여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검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제16조** 그 어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도 불법으로 공시된 기업정보를 수정하거나 불법으로 기업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과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비정상 경영 기업 명록에 추가한 후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고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독촉한다. 기업이 정보공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업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기업이 이 조례에 규정한 기한내에 연도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요구한 기한내에 관련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이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진실을 숨기고 허위정보를 조작한 경우.  비정상 경영 기업 명록에 추가된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비정상 경영 기업 명록에서 삭제한다. 3년이 경과되도록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 추가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 추가된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는 3년내에 기타 기업의 법정대표인, 책임자 직을 담당할 수 없다.  기업이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 추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1항에 규정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기업을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서 삭제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완벽한 신용규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부구매, 공사 입찰, 국유토지 출양, 명예칭호 수여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업정보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아야 하며 법에 따라 비정상 경영 기업 목록 또는 엄중 위법 기업 명록에 추가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제19조** 정부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찰기관, 직상급 정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기업정보를 불법으로 수정하거나 불법으로 기업정보를 수집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부부서의 기업정보 공시 업무 수행에 따르는 구체행정행위가 본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정보 공시로 인해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른 정보 공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3조** 법률, 행정법규의 수권에 의해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보유한 조직의 기업정보 공시는 이 조례에 규정한 정부부서 기업정보 공시 관련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24조**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기술규범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책임지고 제정한다.  자영업자, 농민전문합작사의 정보 공시에 관한 세부 규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25조**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  国务院令第654号  　　《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已经2014年7月23日国务院第57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10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4年8月7日  **第一条**　为了保障公平竞争，促进企业诚信自律，规范企业信息公示，强化企业信用约束，维护交易安全，提高政府监管效能，扩大社会监督，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企业信息，是指在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的企业从事生产经营活动过程中形成的信息，以及政府部门在履行职责过程中产生的能够反映企业状况的信息。  **第三条**　企业信息公示应当真实、及时。公示的企业信息涉及国家秘密、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的，应当报请主管的保密行政管理部门或者国家安全机关批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公示的企业信息涉及企业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应当报请上级主管部门批准。  **第四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领导本行政区域的企业信息公示工作，按照国家社会信用信息平台建设的总体要求，推动本行政区域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的建设。  **第五条**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推进、监督企业信息公示工作，组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的建设。国务院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规定做好企业信息公示相关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本条例规定做好企业信息公示工作。  **第六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其在履行职责过程中产生的下列企业信息：  　　（一）注册登记、备案信息；  　　（二）动产抵押登记信息；  　　（三）股权出质登记信息；  　　（四）行政处罚信息；  　　（五）其他依法应当公示的信息。  　　前款规定的企业信息应当自产生之日起20个工作日内予以公示。  **第七条**　工商行政管理部门以外的其他政府部门（以下简称其他政府部门）应当公示其在履行职责过程中产生的下列企业信息：  　　（一）行政许可准予、变更、延续信息；  　　（二）行政处罚信息；  　　（三）其他依法应当公示的信息。  　　其他政府部门可以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也可以通过其他系统公示前款规定的企业信息。工商行政管理部门和其他政府部门应当按照国家社会信用信息平台建设的总体要求，实现企业信息的互联共享。  **第八条**　企业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工商行政管理部门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当年设立登记的企业，自下一年起报送并公示年度报告。  **第九条**　企业年度报告内容包括：  　　（一）企业通信地址、邮政编码、联系电话、电子邮箱等信息；  　　（二）企业开业、歇业、清算等存续状态信息；  　　（三）企业投资设立企业、购买股权信息；  　　（四）企业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的，其股东或者发起人认缴和实缴的出资额、出资时间、出资方式等信息；  　　（五）有限责任公司股东股权转让等股权变更信息；  　　（六）企业网站以及从事网络经营的网店的名称、网址等信息；  　　（七）企业从业人数、资产总额、负债总额、对外提供保证担保、所有者权益合计、营业总收入、主营业务收入、利润总额、净利润、纳税总额信息。  　　前款第一项至第六项规定的信息应当向社会公示，第七项规定的信息由企业选择是否向社会公示。  　　经企业同意，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查询企业选择不公示的信息。  **第十条** 企业应当自下列信息形成之日起20个工作日内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一）有限责任公司股东或者股份有限公司发起人认缴和实缴的出资额、出资时间、出资方式等信息；  　　（二）有限责任公司股东股权转让等股权变更信息；  　　（三）行政许可取得、变更、延续信息；  　　（四）知识产权出质登记信息；  　　（五）受到行政处罚的信息；  　　（六）其他依法应当公示的信息。  　　工商行政管理部门发现企业未依照前款规定履行公示义务的，应当责令其限期履行。  **第十一条**　政府部门和企业分别对其公示信息的真实性、及时性负责。  **第十二条**　政府部门发现其公示的信息不准确的，应当及时更正。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有证据证明政府部门公示的信息不准确的，有权要求该政府部门予以更正。  　　企业发现其公示的信息不准确的，应当及时更正；但是，企业年度报告公示信息的更正应当在每年6月30日之前完成。更正前后的信息应当同时公示。  **第十三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发现企业公示的信息虚假的，可以向工商行政管理部门举报，接到举报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接到举报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进行核查，予以处理，并将处理情况书面告知举报人。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依照本条例规定公示的企业信息有疑问的，可以向政府部门申请查询，收到查询申请的政府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书面答复申请人。  **第十四条**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按照公平规范的要求，根据企业注册号等随机摇号，确定抽查的企业，组织对企业公示信息的情况进行检查。  　　工商行政管理部门抽查企业公示的信息，可以采取书面检查、实地核查、网络监测等方式。工商行政管理部门抽查企业公示的信息，可以委托会计师事务所、税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专业机构开展相关工作，并依法利用其他政府部门作出的检查、核查结果或者专业机构作出的专业结论。  　　抽查结果由工商行政管理部门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布。  **第十五条**　工商行政管理部门对企业公示的信息依法开展抽查或者根据举报进行核查，企业应当配合，接受询问调查，如实反映情况，提供相关材料。  　　对不予配合情节严重的企业，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  **第十六条**　任何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不得非法修改公示的企业信息，不得非法获取企业信息。  **第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列入经营异常名录，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提醒其履行公示义务；情节严重的，由有关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给予行政处罚；造成他人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企业未按照本条例规定的期限公示年度报告或者未按照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的期限公示有关企业信息的；  　　（二）企业公示信息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  　　被列入经营异常名录的企业依照本条例规定履行公示义务的，由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移出经营异常名录；满3年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公示义务的，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列入严重违法企业名单，并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被列入严重违法企业名单的企业的法定代表人、负责人，3年内不得担任其他企业的法定代表人、负责人。  　　企业自被列入严重违法企业名单之日起满5年未再发生第一款规定情形的，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移出严重违法企业名单。  **第十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建立健全信用约束机制，在政府采购、工程招投标、国有土地出让、授予荣誉称号等工作中，将企业信息作为重要考量因素，对被列入经营异常名录或者严重违法企业名单的企业依法予以限制或者禁入。  **第十九条**　政府部门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由监察机关、上一级政府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条**　非法修改公示的企业信息，或者非法获取企业信息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追究法律责任。  **第二十一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政府部门在企业信息公示工作中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二十二条**　企业依照本条例规定公示信息，不免除其依照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公示信息的义务。  **第二十三条**　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公示企业信息适用本条例关于政府部门公示企业信息的规定。  **第二十四条**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负责制定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的技术规范。  　　个体工商户、农民专业合作社信息公示的具体办法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另行制定。  **第二十五条**　本条例自2014年10月1日起施行。 |